

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 
증진에 관한 조례안  
(김 성 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151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10.

발 의 자 : 김성한, 박주선, 이종숙,  
강선영, 신찬호, 고찬양

### 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,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모유수유실 설치 장소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4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3
- 나. 협조부서 : 건강관리과
- 다. 입법예고 : 2023. 11. 10. ~ 2023. 11. 14.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모유수유실”이란 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이며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모유수유실 설치) ① 구청장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중 의무 설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설치·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
2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

표 2의 임신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서 제외된 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3.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신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.

제4조(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·홍보·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모성·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, 서울특별시,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6조(예산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,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·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□ 「모자보건법」

- 제10조3(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·홍보·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,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